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자구 수정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며, 특별관리임산물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의 개인정보 침해소지 차단을 위해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의 위반행위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대상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

-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로 개정하여 중복검사 유발요인 해소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12호의2에서 제12호의6까지 서식)

- 토양·종자·종묘 구분, 신청량, 종자·종묘 산지 등 기재사항을 세분화
- 과종량·식재량, 면적, 예정 과종·식재 연월일 등 명확히 기재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및 생산신고확인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삭제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서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삭제

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가중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5)

-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와 합의 전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월~10월)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는 자가”를 “하기 위해”로 한다.

제25조의5 중 “영 제17조의4제3항제2호”를 “영 제17조의4제3항제3호”로, “제2조제2호에 따른”을 “제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 토양

[] 종자

[] 종묘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구분	파종·식재 예정지(토지 소재지)	지적 (㎡)	예정 파종·식재면적(㎡)	예정 식재연월
토양				
구분	종자·종묘 산지(토지 소재지)		신청량	생산연월
종자			kg	
			kg	
종묘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1부 3. 임야도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야대장과 임야도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조사	→	결과정리	→	통보
신청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신청인

제 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사 현황		조사지					
		현장조사일				검사기간 ~	
신 청 량		토양	m ²	종자	kg	종묘	m ²
검사시료		토양	g	종자	g	종묘	g(본)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분석항목		기준치		검사결과		합격여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문기관의 장 직인							

특별관리입산물 생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생산지(토지소재지)		지적 (㎡)	파종·식재 면적(㎡)	파종량(식재량) 종자(kg) 종묘(kg 또는 본)	예정 파종·식재연월
총 파종·식재면적	㎡	총 파종·식재량	종자 : kg 종묘 : kg 또는 본	수확예정연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frac{1}{\sqrt{2}}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양·종자 또는 토양·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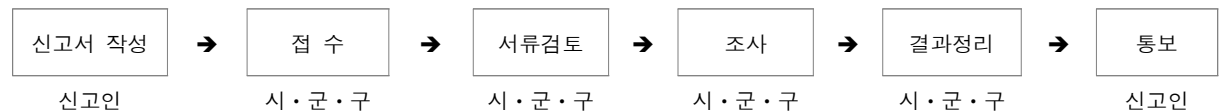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임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최초	
	변경			변경	
생산지 (토지소재지)지적	m ²		총 파종·식재 면적	m ²	
생산방법	[] 종자 / [] 종묘		수확예정연도		

특별관리임산물의 파종 또는 식재 사항

생산지(토지 소재지)	지적 (m ²)	파종·식재 면적(m ²)	파종량(식재량)		예정 파종·식재연월
			종자 (kg)	종묘 (kg 또는 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3항 또는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생산지 (토지 소재지)			
최초 신고번호			최초 신고연월일

생 산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생산자 명의			
생산지 주소			
생산지 위치			
생산면적	m ²	m ²	
파종·식재량	종자 : kg 종묘 : kg 또는 본	종자 : kg 종묘 : kg 또는 본	
파종·식재연월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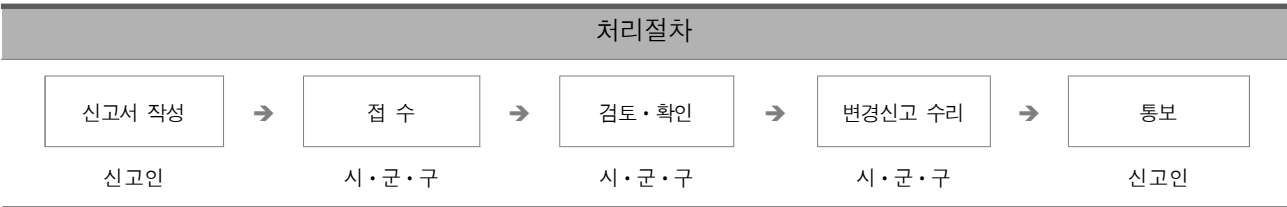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제 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립 청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 합성조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8 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 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 · 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u>하려는 자가</u> 토양·종자 또 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 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 조사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 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 합성조사의 신청 등) ① ----- ----- ----- ----- --- <u>하기 위해</u>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비료사용범위) <u>영 제17조</u> <u>의4제3항제2호</u> 단서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 료”란 「비료관리법」 <u>제2조제2호</u> <u>에 따른</u> 유기질비료 중 어박, 골 분, 대두박을 말한다.	제25조의5(비료사용범위) <u>영 제17조</u> <u>의4제3항제3호</u> ----- ----- ----- <u>제4조제</u> <u>4항에 따라</u> 농림축산식품부장관 <u>이 고시하는</u> -----.